

『1급 소방안전관리자』선임기준 및 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물 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아파트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근거 :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선임자격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소방관련학과) -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8.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근거 : 시행령 제23조제2항
선임방법	선임신고 근거 :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협회사이트 교육정보>실무(선임자)교육 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참고
실무 (선임자) 교육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그 후로 2년에 1회 소집교육(시행규칙 제36조2항)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 명령(시행규칙 제40조)